

◆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5-313호

상도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(안) 재공람·공고

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4-768호(2024.4.11.)로 공람·공고한 우리 구 상도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(안)에 대하여 2024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재공람을 실시하오니 지정된 공람장소에서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2월 13일
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

1. 공람기간 : 2025.2.13. ~ 2025.3.17.(32일간)

2.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: 동작구청 본관 2층 도시정비1과(☎02-820-9806)

3. 기타사항

- 본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하며,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은 본 공람으로 고지된 것으로 갈음함.

4. 공람내용

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상도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

나. 정비구역 및 면적

구분	정비구역 명칭	위치	면적(㎡)	비고
신설	상도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	동작구 상도동 244번지 일원	50,788.45	-

상도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(안)

1. 도시관리계획 결정

1. 용도지역·지구 결정(변경) 조서

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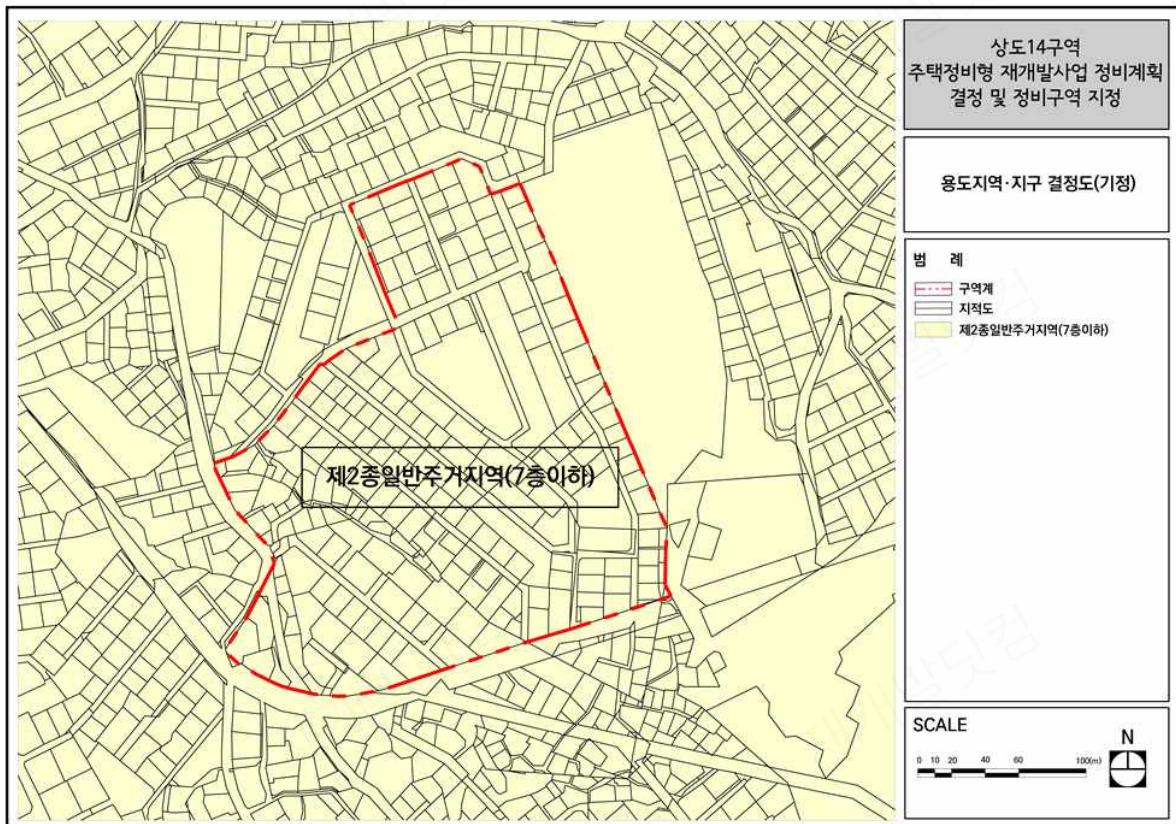
구분	면적(㎡)			구성비(%)	비고
	기정	증감	변경		
합계	50,788.45	-	50,788.45	100.0	-
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	50,788.45	감) 50,788.45	-	-	-
제2종일반주거지역	-	증) 50,788.45	50,788.45	100.0	-

■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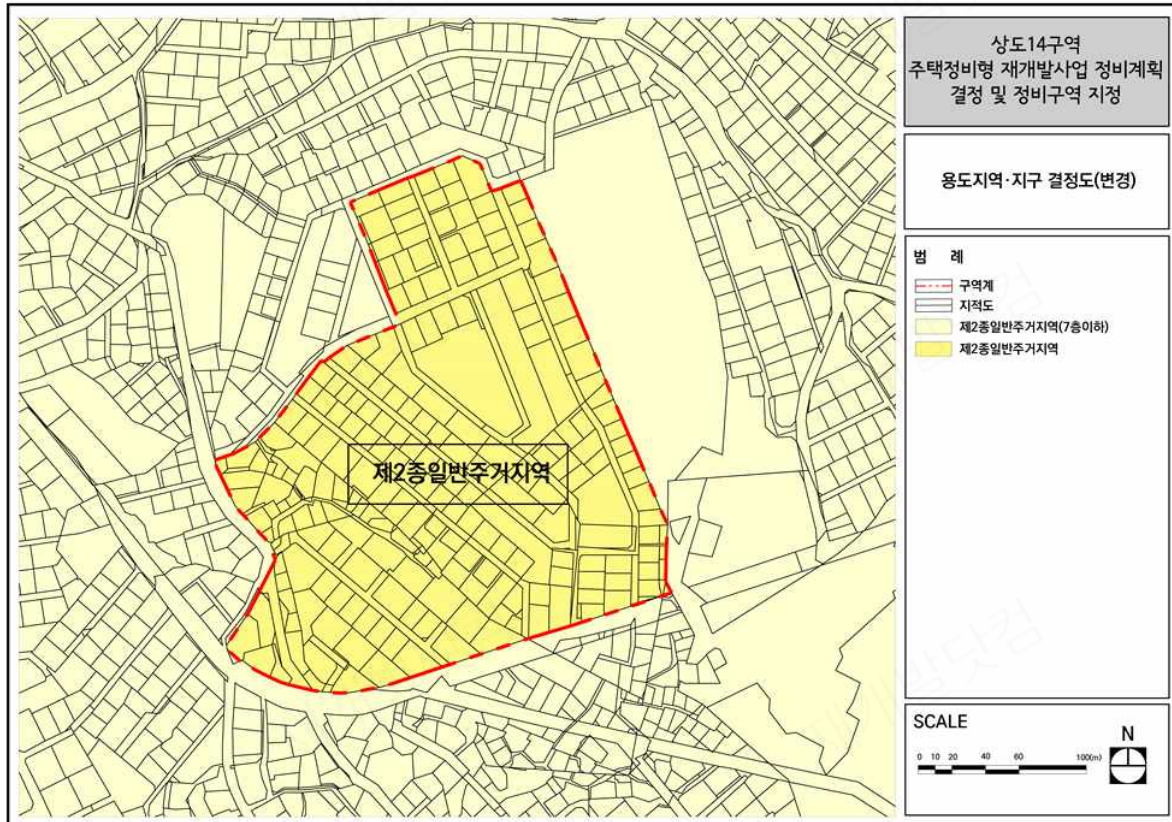
구분	위치	용도지역		면적 (㎡)	변경사유
		기정	변경		
변경	동작구 상도동 244번지 일원	제2종일반 주거지역 (7층 이하)	제2종일반 주거지역	50,788.45	상도14구역 일대 정비구역은 주변지역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계획

나. 용도지구 결정(변경) : 해당없음

[용도지역·용도지구 결정도(기정)]



[용도지역·용도지구 결정도(변경)]



2.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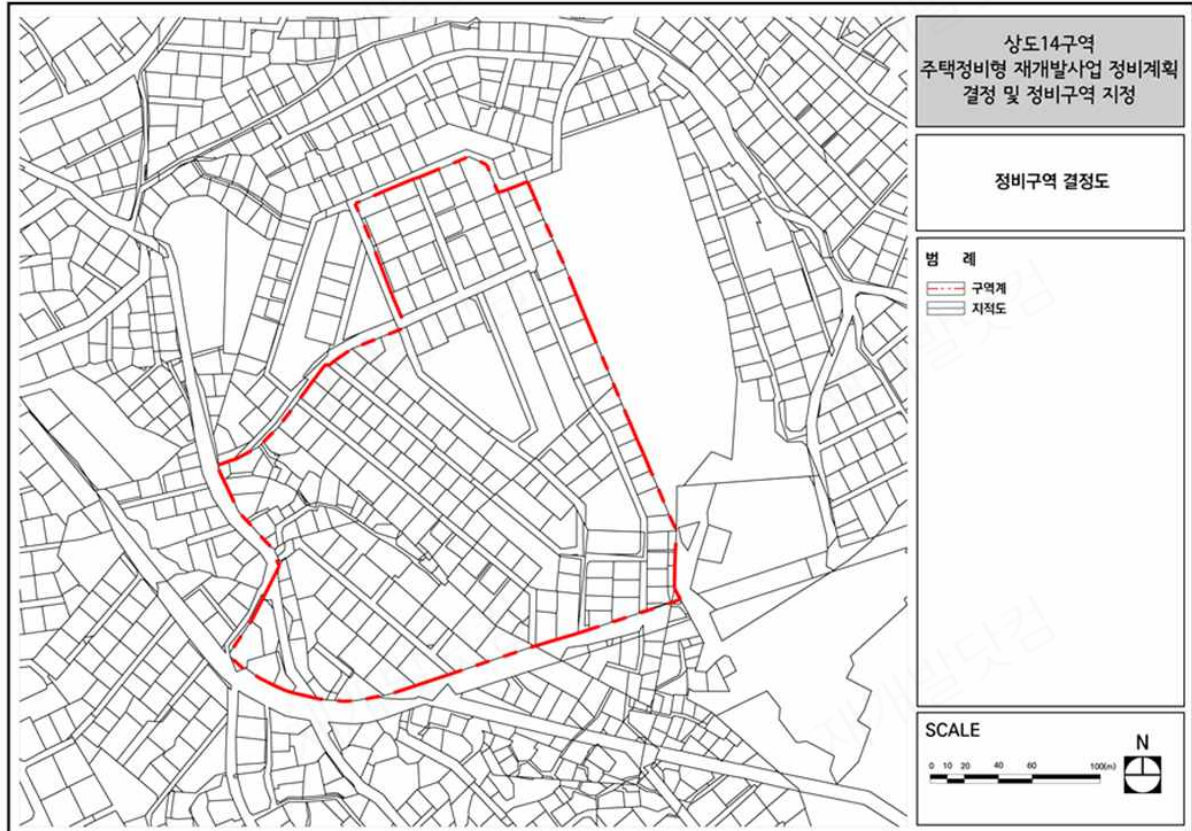
1. 정비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정비구역 명칭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기정	증감	변경	
신설	상도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	동작구 상도동 244번지 일원	-	증) 50,788.45	50,788.45	-

■ 정비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정비구역 명칭	내용	사유	비고
신설	상도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	정비구역 지정	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을 통한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주거환경 개선	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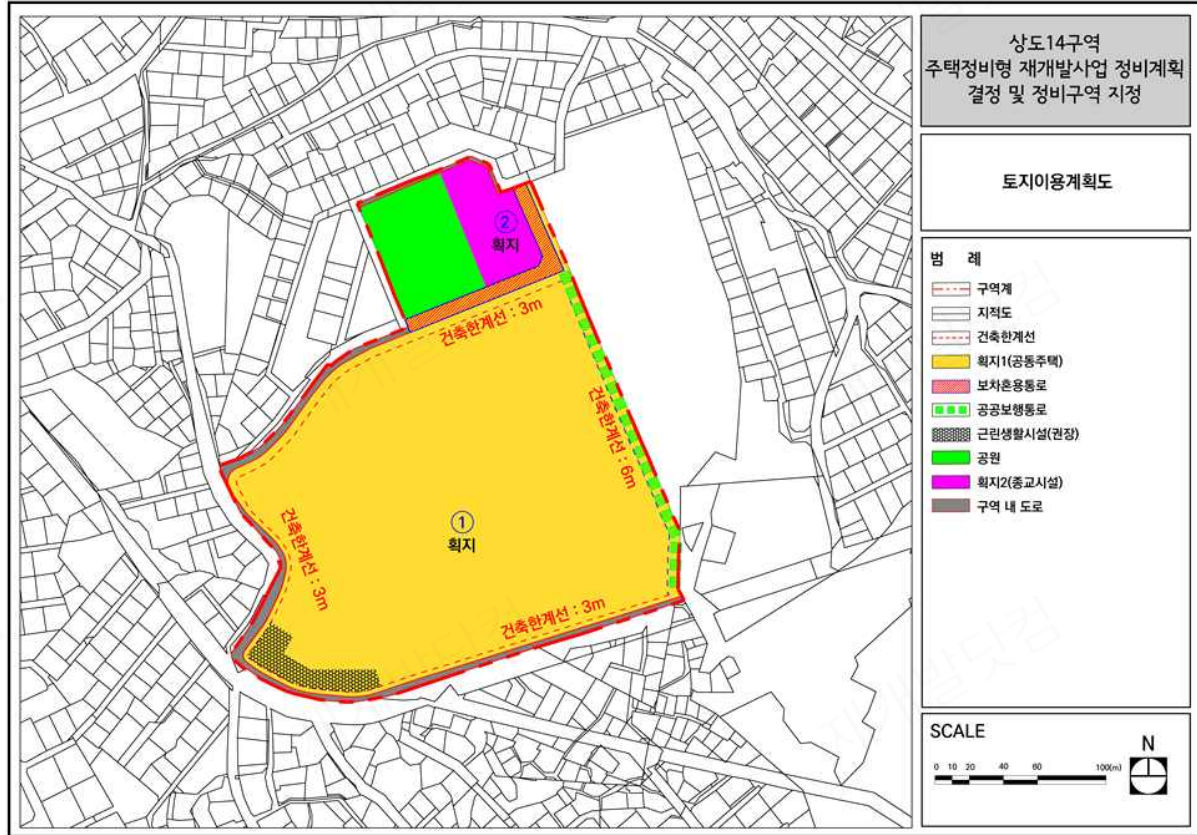
[정비구역 결정도]



2. 토지이용계획

구분	명칭	면적(㎡)			구성비(%)	비고
		기정	증감	변경		
합계		-	증) 50,788.45	50,788.45	100.0	-
정비 기반시설 등	소계	-	증) 5,724.10	5,724.10	11.27	-
	도로	-	증) 2,151.10	2,151.10	4.24	-
	공원	-	증) 3,573.00	3,573.00	7.03	소공원
획지	소계	-	증) 45,064.25	45,064.25	88.73	-
	획지1	-	증) 42,762.25	42,762.25	84.20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	획지2	-	증) 2,302.10	2,302.10	4.53	종교시설

[토지이용계획도]



3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가.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등급	규모	류별	번호	폭원(m)	기능	연장(m) (구역내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기정	중로	3	37	12	국지	1,030	상도동 3-18	상도동 3-35	일반	-	-	총독부772호 (1936.12.26)	-
변경	중로	3	37	12~16	국지	1,030 (268)	상도동 대3-18	상도동 중3-35	일반	-	-		대상지 4m 확폭
폐지	소로	1	-	10	특수	13	상도동 244-225	상도동 238-2	보행자 전용	-	-	동작구102호 (2011.12.22)	-
폐지	기타	-	-	4~6	-	-	-	-	-	-	-	-	-
폐지	기타	-	-	4	-	-	-	-	-	-	-	-	-
기정	소로	3	-	6	국지	-	상도동 244-225	상도동 279-53	일반	-	-	동작구282호 (1978.06.12)	-
변경	소로	2	(38)	10	국지	126	상도동 260-14	상도동 260-209	일반	-	-		-
신설	소로	2	(39)	10	국지	270	상도동 244-209	상도동 244-186	일반	-	-	-	-
신설	소로	3	(40)	6	국지	95	상도동 244-90	상도동 244-140	일반	-	-	-	-

■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결정(변경) 내용	결정(변경) 사유
변경	중로3-37	중로3-37	도로 변경 - B: 12~16m / L: 268m	•정비구역 내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해 일부 구간 확폭
폐지	소로 1-	-	도로 폐지	•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수립을 위해 저이용 도로 폐지
폐지	-	-	도로 폐지	•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수립을 위해 저이용 도로 폐지
폐지	-	-	도로 폐지	•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수립을 위해 저이용 도로 폐지
변경	소로 3-	소로 2-(38)	도로 변경 - B: 10m / L: 126m	• 합리적 도로체계 위한 도로 분리
신설	-	소로 2-(39)	도로 신설 - B: 10m / L: 270m	• 기존도로 확폭 및 연변 부여
신설	-	소로 3-(40)	도로 신설 - B: 6m / L: 95m	• 기존도로 확폭 및 연변 부여

나.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증감	변경		
신설	①	공원	소공원	상도동 244-96	-	증) 3,573.0	3,573.0	-	-

■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결정(변경) 내용	결정(변경) 사유
①	공원	공원 (신설) - 증) 3,573.0㎡	· 대상지 내 소공원을 결정하여 도화공원 기능 분담 및 부족한 공원 공급

상도14구역
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
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

도시계획시설 결정도(기정)

범례

- - - 구역계
- 지리도
- == 도로
- == 종로
- == 노외주차장
- == 초등학교
- == 어린이공원
- == 공공공지

SCALE

0 10 20 40 60 100m

N

동작구 상도동 244번지 일대
(상도14구역)
재개발 정비사업

도시계획시설 결정도(변경)

범례

- 주택재개발정비구역
- 지적도
- 도로
- 중로
- 소공원
- 노외주자정
- 초등학교
- 어린이공원
- 공공공지

SCALE

0 10 20 40 60 100m

N

4.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

구분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 (㎡)			비고
			기정	증감	변경	
공동 이용시설	경로당	상도동 244번지 일대	-	증) 600.0	600.0	-
	어린이 놀이터		-	증) 1,400.0	1,400.0	
	어린이 보육시설		-	증) 600.0	600.0	
	작은도서관		-	증) 250.0	250.0	
	주민운동(공동)시설		-	증) 700.0	700.0	
	다함께돌봄센터		-	증) 100.0	100.0	
	계		-	-	3,650.0	
부대복리 시설	경비실		-	증) 60.0	60.0	
	관리사무소		-	증) 200.0	200.0	
	통신실		-	증) 40.0	40.0	
	계		-	-	300.0	

5. 기존 건축물의 정비·개량 계획

결정 구분	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치	정비개량계획(동)					비고
	명칭	면적(㎡)	명칭	면적(㎡)		계	존치	개수	철거후 신축	철거 이주	
신설	상도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	50,788.45	획지1	42,762.25	동작구 상도동 244번지 일원	206	-	-	206	-	-

6. 건축시설계획

가.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

결정 구분	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치	주된용도	건폐율(%) (건축계획)	용적률(%)		높이(m) 최고층수	
	명칭	면적 (㎡)	명칭	면적(㎡)				정비 계획	법적상한 (건축계획)		
신설	상도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	50,788 .45	획지1	42,762.25	상도동 244번지 일원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60%이하 (24.69%)	250.14% 이하	249.81% 이하	86m이하/ 최고 29층이하	
			획지2	2,302.10	상도동 244-145 일원	종교시설	관계 법령에 따름				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			•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 - 세대 수 : 1,191세대(분양 1,040세대, 임대 151세대) ※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에 따른 증가 세대수 : 해당없음								
			구분(전용면적)		기 준		세대수(세대)		비고		
			합계		-		1,191(100.0%)		-		
			공동 주택	60㎡ 이하		총 건립세대수의 80%이상		869(72.9%)		-	
				60㎡~85㎡ 이하				322(27.1%)		-	
				85㎡ 초과		총 건립세대수의 20%미만		-		-	
			• 정비계획 용적률에 대한 임대 규모별 건설 비율 (국민주택규모 주택 증가분은 제외) - 임대주택 건설계획 : 전체 연면적의 10% 이상								
			구분(전용면적)		기 준		세대수(세대)		비고		
			합계		-		151(100.0%)		-		
			40㎡ 이하		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% 이상		70(46.4%)		-		
			40㎡~50㎡ 이하		-		43(28.5%)		-		
			50㎡~60㎡ 이하		-		24(15.9%)		-		
			60㎡ 이상		-		14(9.3%)		-		
심의완화사항			• 기준용적률 상향 (소규모주택 20% 이상 확보) •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8.5%(공공보행통로, 열린단지) • 용적률(건축법 제56조) 제외 :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주민공동시설 중 개방형 시설 •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(건축법 제61조) • 특별건축구역 지정(건축법 제69조)								
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			• 성대로 변(대상지 남측)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 • 성대로11가길 변(대상지 서측)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 • 성대로21가길 변(대상지 북측) : 도로입체결정 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 • 상도초등학교 변(대상지 동측) : 공공보행통로 포함 6m 이상 이격								
기타 계획	공공보행통로	• 공공보행통로 폭원(6m) 1개소 설치, 건축선 6m 포함 • 공공보행통로는 통행 등을 위해 구분지상권 설정함									
	보차혼용통로	• 주차장 출입구, 상도4동 접근성 개선을 위해 보차혼용통로(8m) 조성 • 보차혼용통로는 통행 등을 위해 구분지상권 설정함									

나. 용적률 계획

구분	산정내용								
토지이용 계획	구역면적	획지1 (공동주택)	신설 정비기반시설 등					신설 정비기반 시설 내 국·공유지 면적	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·공유지 면적
			계	도로	공원	건축물 대지지분	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면적		
	50,788.45㎡	42,762.25㎡	5,724.10㎡	2,151.1㎡	3,573.0㎡	-	-	153.1㎡	1,386.9㎡
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(순부담)	■ 순부담률 : 9.78% ■ 순부담 면적 = 신설 정비기반시설 -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·공유지 - 대지 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내 국·공유지 = 5,724.10㎡ - 153.1㎡ - 1,386.9㎡ = 4,184.10㎡								
기준용적률	■ 기준 : 210% - 정비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 190% - 소형주택 20% 완화사항 적용 (40~50㎡이하 분양주택 공급 10%, 50~60㎡이하 분양주택 공급 10%)								
허용용적률	■ 허용 : 223.43% - 「2030 도시·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」 8.5% 적용 (공공보행통로, 열린단지) ※ 향후 건축 심의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 대해서 최종 결정함 - 1.58 = 서울시 대지 평균 공시지가 / 대상구역 대지 평균 공시지가 = 5,861,129(원/㎡) / 3,721,714(원/㎡) - 8.5%(허용용적률 인센티브) × 1.58(사업성 보정계수) = 13.43% - 210%(기준용적률) + 13.43%(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허용용적률 인센티브) = 223.43%								
상한용적률	■ 기준 : 210.0%, 허용 : 223.43% 허용용적률 + {(1 + (1.3 × 가중치 × α토지)) + (0.7 × β건축물)} = 223.43% + [210%×1.3×1.0×(4,184.1/42,762.25)] ■ 정비계획 용적률 : 250.14%								
α [토지]	■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÷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 후 대지면적 = (4,184.1㎡) ÷ (42,762.25㎡) = 0.0978								
β [건축물]	해당사항 없음								
예정 법적상한 용적률	■ 상한용적률 250.14% (법적 상한용적률 250% 이하) = 249.81% ※ 상한용적률이 법적 상한용적률을 초과하였으나, 법적 상한용적률 이하로 계획용적률 적용								

다. 공공시설 기부채납 계획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㎡)			관리청	비고
				기정	대지면적 (토지지분)	연면적 (건축물환산면적)		
신설	공원	소공원	상도동 244-96	-	증) 3,573.0	-	동작구	-
신설	도로	-	-	-	증) 2,151.1	-	동작구	-

라.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

구분	시설명	위치
대지 내 공지	공공보행통로	• 공공보행통로 폭원(6m) 1개소 설치, 건축선 6m 포함 •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공공보행통로에 구분지상권 [지상권자(동작구/존속기간(영구))] 설정 ※ 길이 140m, 폭 6m, 면적 1,545㎡ • 사업시행인가 조건,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지상권 설정사항을 명기하고, 이를 근거로 준공 및 이전고시 시점에 지상권설정등기 이행
	보차혼용통로	• 주차장 출입구, 상도4동성당 접근성 개선을 위해 보차혼용통로(8m) 조성 •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차혼용통로에 구분지상권 [지상권자(동작구/존속기간(영구))] 설정 ※ 길이 70m, 폭 8m, 면적 1,148㎡ • 사업시행인가 조건,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지상권 설정사항을 명기하고, 이를 근거로 준공 및 이전고시 시점에 지상권설정등기 이행

7. 도시경관과 환경보전,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 결과

가.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

구분	계획내용	비고
도시경관	• 국사봉 경관 및 저층주거지 등 스카이라인이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• 종합적인 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형성유도	-
환경보전	• 환경성 검토를 통하여 정비사업으로 인한 환경 저해 요소를 검토하여 환경영향 저감방안 마련 • 부득이한 법면 발생시 경계부에 녹화 및 조정처리 • 주차시설을 최대한 지하에 설치하여 지상녹화를 통한 친환경적 주거지 조성 • 조경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자연친화적인 단지계획을 수립 ※ 공사시 저감 방안(세부계획 일부) -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륜·세차시설, 방진망설치, 사업대상지내 살수설치, 풍속에 따른 공사 진행여부 판단 등 적절한 저감대책을 현장의 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수립·시행토록 할 계획임	-
재난방지	• 구역 내 화재 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리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• 화재시 소방도로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 구축 도모 •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	-

8. 정비사업 시행계획

구분	시행방법	시행예정 시기	사업시행(예정)자	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	비고
신설	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(관리처분계획에 의함)	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	(가칭) 상도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	• 현황세대수 : 800세대 • 계획세대수 : 1,191세대 • 증가세대수 : 391세대	-

9.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

구분	계획내용	비고
교육환경 보호계획	•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·진동을 규제 •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 • 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 (소음·진동·먼지 등)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•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계획 - 보행자도로에는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겠음 - 학교 주변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차량의 속도를 줄이도록 하겠음 • 조망 및 일조는 조망에 장애가 없도록 계획하겠으며, 일조는 동지날을 기준으로 일조기준에 영향이 없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교육환경평가 대상일 경우에는 교육환경평가를 받도록 하겠음 • 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준수토록 계획	-

10. 정비구역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: 해당없음

11.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

가. 정비구역의 주택현실 현황

1) 건축물 동수

구역 내 건축물 동수			구역 내 건축물 동수		
계	주거용 건축물	비주거용 건축물	계	유허가	무허가
206	198	8	206	206	-

2) 거주 현황

유형별 주택 호수	거주 가구수			구역 내 거주 인구수			비고
	소 계	가옥주	세입자	소 계	가옥주	세입자	
계	1,239	341	898	-	-	-	-
단독주택	208	117	91	-	-	-	-
공동주택	1,031	224	807	-	-	-	-

3) 규모별, 유형별 거주현황

구역 내 거주 주택(건축물) 규모					비고
구분	소계	60㎡이하	60초과 ~ 85㎡이하	85㎡초과	
계	206	14	8	184	-
주거용	198	13	7	178	-
비주거용	8	1	1	6	-

나.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

구분	계	조합원분양	일반분양	임대주택	비고
계	1,191	846	194	151	-
60㎡이하	869	585	147	137	-
60㎡~85㎡이하	322	261	47	14	-
85㎡초과	-	-	-	-	-

※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9조 의거 이주대책에 대한 인가권자 협의 결과에 따라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은 변경될 수 있음

12. 세입자 주거대책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4조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 도입 및 기부채납 및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세입자 주거 안정화 도모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2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27조에 따름
- 세입자 주거대책으로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65조에 따라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하여 보상하도록 함

13.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

구분	계획 내용	비고
안전 및 범죄예방	• 단지 내 공원 등 공공공간은 도로변 또는 주동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자연감시 시스템(휴먼 시큐리티)을 구축 • 시선의 사각지대는 CCTV 설치를 통한 자연감시 기능 보완 • 산책로 및 보행가로변에는 충분한 거리에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로 조성	

14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

구분	가구	면적(㎡)	획지		비고
			위치	면적(㎡)	
신설	획지1	42,762.25	동작구 상도동 244번지 일원	42,762.25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
15. 임대주택 건설 계획

가. 임대주택 건설 계획

계획기준	• 임대주택 건설 : 주택 전체 세대수(법적상한 증가분 제외)의 15% 또는 연면적의 10% •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(법적상한 증가분 제외)의 30%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% 이상 : 전용면적 40㎡이하		
산출근거	• 전체세대수(법적상한 증가분 제외) : 1,191세대 = 1,191세대 - 0세대(법적상한 증가분) •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 : 151세대 - 연면적의 10%이상 (10.01%공급) : 166,142.49㎡ × 10% = 16,614.24㎡ ∴ 16,623.49㎡(151세대) ≥ 16,614.24㎡ • 전용면적 40㎡이하 임대주택 세대수 :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(법적상한 증가분 제외)의 30%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% 이상 : 151세대 - 151세대의 30% 이상 : 151 × 30% = 45.3세대 - 1,191세대의 5% 이상 : 1,191 × 5% = 59.5세대 ∴ 151세대 계획 > 45.3세대 또는 59.5세대		
건립규모	세대 수	전체 비율(%)	임대주택 비율(%)
합계	151	12.68	100.0
전용 39㎡	70	5.88	46.36
전용 48㎡	43	3.61	28.48
전용 59㎡	24	2.02	15.89
전용 84㎡	14	1.18	9.27

나.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: 해당없음

16.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

- 정비구역 내 녹지 및 보호수 등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은 없으며, 사업시행 시 재활용 가능한 수목·수형, 재활용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수반하겠음
- 재활용이 가능한 수목은 대상지 서측 역사공원으로 이식하도록 하겠음

17.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

현 황	인 구		주택수	
	계 획		현황	계획
	가구당 인구	인구	가구수	세대수
1,239	2.5	2,978	800	1,191

18. 구역 내 옛길, 옛물길,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·문화자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 : 해당없음

19. 환경성 검토 결과

검토항목	목표기준	준수 여부	현황 및 검토결과	계획에의 반영사항	비고
1. 비오톱	비오톱 보전 등급향상	○	비오톱유형평가등급 현재 5등급 → 목표 4·5등급	녹지공간 확보로 비오톱 개선 및 보전가치 상승	
2. 생태 네트워크	녹지·수생태 연결성 확보	○	현재 대상지 내 녹지 미분포 녹지평가지표1 달성	소공원 조성 녹지계획 수립	
3. 토지이용	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	○	노후·불량주택 밀집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여건 열악	주변 개발여건 및 입지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공간계획 수립	
4. 토양	토양오염 최소화	○	토양오염유발시설 미분포 토양오염우려기준(1지역) 만족	폐유 보관소 설치 및 전문처리업체를 통한 위탁처리	
5. 지형·지질	지형·지질 변동 최소화	○	평균표고 49.49m 평균경사 8°, 급경사지 1.0%	단차발생 최소화로 지형순응형 계획 수립	
6. 물순환(수리·수문)	생태면적률 30%	○	기존 생태면적률 불량 생태면적률 30.13% 확보	자연 및 인공지반녹지 조성을 통한 생태면적률 상향 계획	
7. 수질	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	○	공사 시 토사유출 발생 운영 시 오수 발생	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서남물재생센터로 유입·처리	
8. 바람	바람길 확보	○	바람환경공간 유형분석(단독주택지와 불투수포장비율이 낮은 시가지)	녹지 및 보행통로를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으로 바람길 확보	
9. 열	열환경 영향 최소화	○	열환경공간 유형분석 (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4층 이하 주거지)	공원 및 녹지 조성으로 Cooling Zone 확보 및 열섬효과 감소	
10. 대기질·미세먼지	대기오염 최소화	○	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 운영 시 대기오염물질 영향	살수차 운행 및 방진망 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방안 수립	
11. 온실가스	온실가스저감	○	공사 시 및 운영 시 온실가스 배출	고효율 건설장비 사용 등 신·재생에너지 적용 검토	
12. 친환경적 자원순환	폐기물발생량 최소화	○	건설폐기물 및 폐유 등 발생	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 처리 전문 처리업체를 통한 위탁처리	
13. 에너지	에너지자립률 상향계획 수립	○	과다한 에너지소비 유발 없음	신·재생에너지 공급률 서울특별시 기준 준수	
14. 소음·진동	소음·진동 최소화	○	공사에 의한 소음·진동 발생	공사 시 가설방음판넬 설치	
15. 경 관	스카이라인 보전 등	○	주변 건물간 조화로운 입면계획 필요	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적용	
16. 휴식 및 여가공간	휴식·여가공간 최대 확보	○	대상지 외 공원 인접	주변공원과 연계하여 공원 및 녹지 조성	
17. 일 조	일조 침해 최소화	○	사업대상지 인근 공동주택 및 교육시설 등에 일조영향	건축계획 관련 규정 준수 및 일조 민원 해소대책 적극 강구	
18. 보행친화공간	보행자전용 도로계획 수립	○	인도 및 차도 혼재로 보행공간 미확보	공공보행통로 계획 등 보행환경 개선	
19. 인구	인구 고려한 계획수립	○	공사 시 영향 미미	주변 개발현황 및 장애 발전을 고려한 인구 수용계획 수립	

3. 관련도면 :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2층 도시정비1과(☎02-820-9806)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인사발령

[발령 제68호]

연번	성 명	현 직		발 령 사 항
		소 속	직 급	
1	장정호	복 지 사 업 과	지방시설관리서기 (시 설 관 리)	원 에 의 하 여 그 직 을 면 함

2025. 2. 7.字.

[발령 제69호]

연번	성 명	현 직		발 령 사 항
		소 속	직 급	
1	김 진 희	(신)	규)	지 방 방 송 통 신 서 기 보 에 임 함 운 영 지 원 과 근 무 를 명 함
2	김 나 윤	(신)	규)	지 방 시 설 서 기 보 시 보 (건 축) 에 임 함 안 전 환 경 국 도 시 안 전 과 근 무 를 명 함
3	김 선 아	(신)	규)	지 방 시 설 서 기 보 시 보 (건 축) 에 임 함 안 전 환 경 국 도 시 안 전 과 근 무 를 명 함
4	김 아 연	(신)	규)	지 방 공 업 서 기 보 (화 공) 에 임 함 안 전 환 경 국 환 경 과 근 무 를 명 함
5	우 혜 원	(신)	규)	지 방 녹 지 서 기 보 시 보 에 임 함 안 전 환 경 국 공 원 녹 지 과 근 무 를 명 함
6	조 인 애	(신)	규)	지 방 시 설 서 기 보 시 보 (지 적) 에 임 함 행 정 자 치 국 부 동 산 정 보 과 근 무 를 명 함
7	박 예 진	(신)	규)	지 방 시 설 서 기 보 시 보 (지 적) 에 임 함 행 정 자 치 국 부 동 산 정 보 과 근 무 를 명 함
8	허 진 호	(신)	규)	지 방 공 업 서 기 보 시 보 (기 계) 에 임 함 도 시 교 통 국 교 통 행 정 과 근 무 를 명 함
9	임 동 건	(신)	규)	지 방 시 설 서 기 보 시 보 (토 목) 에 임 함 도 시 교 통 국 교 통 행 정 과 근 무 를 명 함
10	이 도 연	(신)	규)	지 방 시 설 서 기 보 시 보 (토 목) 에 임 함 도 시 교 통 국 도 로 관 리 과 근 무 를 명 함
11	방 주 실	(신)	규)	지 방 시 설 서 기 보 시 보 (건 축) 에 임 함 도 시 교 통 국 건 축 과 근 무 를 명 함
12	길 은 정	(신)	규)	지 방 시 설 서 기 보 시 보 (건 축) 에 임 함 도 시 교 통 국 건 축 과 근 무 를 명 함
13	신 윤 호	(신)	규)	지 방 시 설 관 리 서 기 보 시 보 (기 계 시 설) 에 임 함 복 지 국 복 지 사 업 과 근 무 를 명 함
14	박 희 진	(신)	규)	지 방 보 건 서 기 보 시 보 에 임 함 보 건 소 근 무 를 명 함
15	이 슬	(신)	규)	지 방 보 건 서 기 보 시 보 에 임 함 보 건 소 근 무 를 명 함

2025. 2. 10.字.

[발령 제70호]

연번	성 명	현 직		발 령 사 항
		소 속	직 급	
1	김 혜 란	예 산 회 계 과	지 방 행 정 사 무 관	동 작 구 근 무 를 명 함
2	유 재 천	일 자 리 정 책 과	지 방 행 정 사 무 관	예 산 회 계 과 장 에 보 함
3	이 수 형	일 자 리 정 책 과	지 방 행 정 주 사	일 자 리 정 책 과 장 직 무 대 리 를 명 함 (2025.2.11. ~ 별 도 명 령 시 까 지)

2025. 2. 11.字.

동
작
구
보

제
1
9
3
0
호

동
작
구

www.dongjak.go.kr

